

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,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

(제11조의2 관련)

분 야 별		장비,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
에너지	전기	예비전력 1,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
	석유	・ 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 ・ 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
	가스	최소 운영재고 19.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공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
정보통신		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대상에 대한 통신 기능 유지
교통수송	철도	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
	항공	・ 항공사: 1일 항공기 운항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・ 공항 운영: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
	항만	컨테이너 야드(CY)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
	화물	컨테이너 야드(CY)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
	도로	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(IC) 간 접근 불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
	기타	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
금 융		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
보건의료	의료서비스	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
	혈액	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
원자력		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
환경	소각	주 4일 이상(1일 8시간 이상) 쓰레기 반입 및 소각
	매립	주 4일 이상(1일 8시간 이상)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 [침출수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]
식용수		정수장(광역):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정수장(지방):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
기타 분야		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,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등은 재난발생 유형, 특성, 빈도,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기준을 정하여 유지